

#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0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4월 29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변경되는 노동이사제의 대상기관 및 정수의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노동이사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(안 부칙).

#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노동이사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469 369 563 398">부 칙</p> <p data-bbox="252 448 655 477"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252 524 359 553">&lt;신 설&gt;</p>	<p data-bbox="1031 369 1125 398">부 칙</p> <p data-bbox="815 448 1342 517"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5 524 1342 629"><u>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노동이사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0명”을 “3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1년”을 각각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300명”을 각각 “1,000명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노동이사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대상기관)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<u>100명</u>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<u>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대상기관) ① ----- ----- <u>300명</u>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6조(자격) ①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<u>1년</u>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<u>1년</u>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6조(자격) ①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3년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정수)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노동자 수가 <u>300명</u> 이상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2명</p> <p>2. 노동자 수가 <u>300명</u> 미만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1명</p>	<p>제7조(정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000명</u> 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1,000명</u> ----- -----</p>